

# 2025년 장기요양 「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」 연장 안내문

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「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」 참여기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사업내용**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및 요양보호사 동행지원

**사업기간** 2025. 1. ~ 별도 통보 시까지

**사업지역** 춘천시, 평창군, 김해시, 양산시, 의성군, 광주 서구북구, 전주시, 여주시, 대전 대덕유성, 청주시, 진천군, 천안시, 세종시, 청양군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군포시 ... 20개 지역

**이용대상** 참여지역 장기요양 1~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...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

**급여비용** ①요양보호사 동행비용 ⊕ ②참여기관 인센티브

- (동행비용) 편도기준 1회 3,000원 ... 1일 최대 2회, 6,000원
- (인센티브) 기관 당 월 10만원 ... 월 급여제공 10건 이상 시 지급

**급여기준** ... '25년 급여제공기준, 운영매뉴얼 참조

- 방문요양 **급여제공 시간 내**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.
-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**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**는 가정이어야 함.

**급여내용**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**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외출할 때**, 요양보호사가 **가정에서 목적지까지** 또는 **목적지에서 가정까지** 동행하여 **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**

## 주요내용

-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 시 발생하는 **운임비** 등은 **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**
- 수급자 외출 시 **지자체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**으로 함. 다만 차량 배차 및 예약 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**일반택시 이용도 인정**함.  
※ 차량이용 시 운임비 **영수증** 반드시 징구 및 보관(일반택시 포함)
- **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**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거나, 외출 후 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안전한 귀가 까지를 서비스로 함.